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3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3월 10일
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3. 2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뿌리산업이란 나무의 뿌리처럼 길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가지며,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6개의 기반 공정과 차세대 공정 기술 8개를 포함¹⁾하여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그

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긴 시간 동안 뿌리산업은 3D업종(Dangerous, Dirty, Difficult)으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주요성이 저평가되었으나 2011년 7월 정부에서는 「뿌리산업법」을 제정하여 제조업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간을 마련했으며 서울시에서도 지역 내 뿌리산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2024년 5월 제정한 바,

- 관련 조례 입안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1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만 뿌리산업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구(區)에는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바,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등 조례 전체의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
- 안 제5조에는 종합계획의 수립,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뿌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,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와 그 구성, 안 제10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내용을 담아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, 임대료 상승, 생태계 붕괴로 인해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노력 규정을 포함함.

○ 검토 결과

- 전국 6만 1천여개의 뿌리기업 중 서울시에 4천 5백여개의 기업이 소재해 있으며 그중 1천 2백여개 업체가 문래동에 소재해 있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뿌리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현실임.
- 본 조례안에 따르면 1,264개의 뿌리산업 사업체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해 5년 주기의 종합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며 뿌리산업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정책, 사업, 계획 등의 자문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이 기대됨.
- 다만, 우리 구(區)의 문래동 기계 금속 집적지는 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공장 확장, 신규 장비 도입 등의 시설 환경 개선 등이 어려운 현실과 맞물려 집적지 이전을 희망하는

1) 기존 금속 소재 중심의 기반공정(6개)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

차세대 공정기술(8개): 출·프레스, 정밀가공, 적층제조, 산업용 필름·지류공정, 로봇, 센서, 산업지능형 SW, 엔지니어링설계

수요가 많아 집단 이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- 이는 장기적으로는 관내에 뿌리산업 사업체가 탈출하게 되므로 우리 구(區)의 범위에서만 본다면 모(母)법인 「뿌리산업법」 및 「서울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가 가지는 뿌리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목적과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음.
- 그러나 뿌리산업체와 전국 단위의 범위에서 본다면 지속 가능한 뿌리산업 생태계 유지를 전제로 한 집단 이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음.

4. 심사결과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91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5. 3. 24.

제안자: 김지연 의원 외 8명

1. 수정이유

- 안 제9조 제2항과 제9조 제4항에 담당과장이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 위원회 위원의 당연직과 간사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9조제2항에서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에서 ‘과장’을 삭제하고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에서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에서 ‘과장’을 삭제하고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<u>국장·과장</u> 은 당연직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장</u>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뿌리기술”이란 주조(鑄造), 금형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工), 용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處理), 열처리(熱處理)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(射出)·프레스, 정밀가공(精密加工), 로봇,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.
2. “뿌리산업”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.
3. “뿌리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 - 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나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명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이전이 필요한 경우 행정·정

보·기술·인력·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
3. 뿌리산업의 첨단화,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
4.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
5.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6.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·보급·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7.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8.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
9.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10.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뿌리산업의 육성 등)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·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
2.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
3.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
4.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
5.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,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
6.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7.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뿌리기업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
2.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
3.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
4. 뿌리기업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 지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

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영등포구의회 의원
2.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사가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뿌리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뿌리기업 및 종사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3. .

발 의 자: 김지연, 임현호, 전승관
남완현, 이규선, 양송이
최봉희, 신흥식, 정선희
의원 (9인)

1. 제안이유

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마.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바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,
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뿌리기술”이란 주조(鑄造), 금형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工), 용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處理), 열처리(熱處理)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(射出)·프레스, 정밀가공(精密加工), 로봇,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.

2. “뿌리산업”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.

3. “뿌리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나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명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이점이 필요한 경우 행정·정보·기술·인력·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
3. 뿌리산업의 첨단화,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
4.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
5.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6.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·보급·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7.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8.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

9.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10.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뿌리산업의 육성 등)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·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

2.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

3.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

4.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

5.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,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

6.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7.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뿌리기업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
2.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
3.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
4. 뿌리기업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 지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 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

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·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영등포구의회 의원

2.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회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사가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뿌리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뿌리기업 및 종사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91	관련 번호
----------	-----	----------

제안연월일: 2025. 3. 24.

제안자: 김지연 의원 외 8명

1. 수정이유

- 안 제9조 제2항과 제9조 제4항에 담당과장이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 위원회 위원의 당연직과 간사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함.

2. 수정내용

- 안 제9조제2항에서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에서 ‘과장’을 삭제하고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제2항에서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·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에서 ‘과장’을 삭제하고 “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<u>국장·과장</u> 은 당연직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장</u>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뿌리기술”이란 주조(鑄造), 금형(金型), 소성가공(塑性加工), 용접(鎔接), 표면처리(表面處理), 열처리(熱處理)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(射出)·프레스, 정밀가공(精密加工), 로봇,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.

2. “뿌리산업”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.

3. “뿌리기업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

가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나.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·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명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이점이 필요한 경우 행정·정보·기술·인력·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5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
3. 뿌리산업의 첨단화,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
4.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
5.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6.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·보급·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
7.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8.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

9.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10.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11.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뿌리산업의 육성 등)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·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
2.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
3.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·관리
4.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
5.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,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
6.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7.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뿌리기업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
2.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
3.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
4. 뿌리기업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 지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 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

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1. 영등포구의회 의원

2.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3.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사가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0조(표창) 구청장은 뿌리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뿌리기업 및 종사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